

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677
----------	------

2026년 6월 16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년 5월 26일, 남창진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6년 5월 27일

다. 상정일자: 제33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6년 6월 16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남창진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인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2026년 3월 31일 개정되었으므로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법적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골자

- 1) “수목원” 정의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 실시를 추가함(안 제2조제1호).
- 2) 수목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(안 제4조제2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의 수집·증식·보존·관리·전시 등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지난 3월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을 개정¹⁾하여 ‘수목유전자원 교육’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바 있음.

<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(관련 조항 부분 발췌)>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수목원”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·증식·보존·관리 및 <u>전시</u> 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·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. 가. ~ 라. (생략) 1의2. ~ 7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전시</u> <u>하고,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</u> <u>하며,</u> ----- ----- -----.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1의2. ~ 7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사업)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다만,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. 1. 수목유전자원의 수집·증식·보존·복원·관리 및 <u>전시</u> 2. ~ 13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제3조(사업) ① ----- -----.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관리·전시 및 수목유전자원에 관한</u> <u>교육</u> 2. ~ 13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- 본 조례안은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의(제2조)와 수행 사업(제3조) 조문에 ‘수목유전자원 교육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음.

1)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시행일(2026.3.31.),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: 의안번호(15421), 제안일자(2025.12.19.), 제안자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)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전시하고”를 “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,”로 한다.

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식물유전자원의 수집·증식·보존·복원·관리·전시 및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수목원”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·증식·보존·관리 및 <u>전시하고</u>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·산업적 연구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,</u> ----- 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사업)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식물유전자원의 수집·증식·보존·복원·관리 및 전시</u></p> <p>3. ~ 10. (생략)</p>	<p>제4조(사업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식물유전자원의 수집·증식·보존·복원·관리·전시 및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</u></p> <p>3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